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해산급여 지원 부적정

기 관 명 서구, 연제구, 수영구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해산급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규정에 따르면 급여액은 1인당 60만원(2013년은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서구 및 수영구에서는 해산급여를 기 지원받은 ○○○, ○○○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해산급여를 중복으로 지급하였다.

【표 1】 해산급여 중복지원 현황

(단위: 원)

산모	생년월일	해산일	시군구	해산급여		비 고
				지급일	금액	
○○○	○○○○ ○○	○○○○- ○○-○○	서구	2014-12-10	600,000원	시설수급자(○○○시설 ○○○○○원)

			동래구	2014-11-21	600,000원	일반수급자
○○○	○○○○ ○○	○○○○- ○○-○○	서구	2016-01-20	600,000원	시설수급자(○○○시설 ○○○○○원)
			수영구	2016-04-20	600,000원	일반수급자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연제구에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해산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표 2】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해산급여 간 중복지원 현황

(단위: 원)

구/군	산모	생년월일	해산일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해산급여	
				신청일	시작일	지급일	금액
연제구	○○○	○○○○ ○○	○○○○- ○○-○○	2015-09-08	2015-10-05	2015-12-30	600,000원

조치할 사항

서구청장은

[시정] ○○○에게 중복으로 지급된 해산급여 60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제구청장은

[시정] ○○○에게 중복으로 지급된 해산급여 60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청장은

[시정] ○○○에게 중복으로 지급된 해산급여 60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